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8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이개호・이기헌・박홍배

정진욱 • 어기구 • 김영배

이정문 • 위성곤 • 서영교

소병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, 유사 업무를 수행 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 한 실정임.

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저평가,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, 이는 요양보호 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 킬 우려가 있음.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 한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.

이에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,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 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,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15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7호 중 "제39조의19"를 "제39조의20"으로 한다.

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지를 각각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로 하고, 제3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9조의15(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, 요양보호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 - 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・부당 행

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61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39조의17제9항"을 "제39조의18제9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제39조의17제5항"을 "제39조의18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제39조의16제2항"을 "제39조의17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39조의20제5항"을 "제39조의21 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노	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
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제39조의19</u> 에 따른 학대피해	7. <u>제39조의20</u>
노인 전용쉼터	
<u><신 설></u>	제39조의15(요양보호사의 처우개
	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
	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
	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
	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
	<u>상시키고, 요양보호사를 폭력으</u>
	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
	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
	양보호사의 보수가 「사회복지
	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
	위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사
	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도
	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	③ 국가는 요양보호사의 적정
	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
	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

<u>제39조의15</u> ~ <u>제39조의21</u> (생 <u>저</u>략)

- 제61조의2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 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제39조의17제9항</u>에 따른 해 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

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	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	
단체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보	
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제3항에	
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	
준수율 등에 관하여 2년마다	
조사 · 공표하여야 한다.	
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	
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・부	
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	
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	
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	
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	
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	
아니한다.	
 세39조의 <u>16</u> ~ <u>제39조의22</u> (종전	
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	
지와 같음)	
세61조의2(과태료) ①	
<u>.</u>	
1. (현행과 같음)	
2. 제39조의18제9항	

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 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3. 제39조의18제5항-----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 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1. 제39조의17제2항-----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•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 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.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2. 제39조의21제5항-----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 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 자 • 가족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생 략)